부패 없애GO 청렴 올리GO

청렴 신 바람

VOL. 2
2018.10.22.(월)

▌공직자 청렴가이드 ▌

■ 불가피하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면?

제공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, 반환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에게 **거부의사를 밝히고**, 받은 금품등은 **지체 없이 반환한다.**

1.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,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2.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,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한다.

거부의사 표시, 반환과 더불어 금품 수수 사실을 **'지체 없이' 소속 기관장(행동강령책임관)에게 신고**해야 한다.

반환하지 못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한다.

다음 각 호 등의 사유로 금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**소속 기관장(행동강령책임관)에게 인도**해야 한다.

1.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2.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
3.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거부표시, 반환, 신고, 인도의 시기 및 효과

(시기) 거부의사 표시, 반환, 신고, 인도는 **'지체 없이' 해야 함**

※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해야 함

(효과) **'지체 없이' 신고하거나,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('지체 없이' 하였는지가 중요)**

▌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 안내 ▌

■ '19.4.17.부터 성범죄 공무원 공직퇴출, 영구배제 등 담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시행

1 주요 개정 사항

①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(법 제33조제6호의3, 개정)

☞ **성폭력범죄 전체***에 대해 **100만원 이상의 벌금형**을 선고받은 경우 **3년간 공직임용 제한**

***「성폭력처벌법」 제2조의 모든 '성폭력범죄'**
- 음행매개, 음화반포·제조, 공연음란
- 강간, 유사강간, 준강간, 강제추행, 준강제추행 등

②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영구적 임용결격 사유 신설(법 제33조제6호의4, 신설)

☞ **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***로 파면·해임,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**영구적 공직임용 배제**

***「성폭력처벌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* 행위**
-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, 강제추행, 성매매행위 등

Q & A

Q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?

A 임용결격 사유(법 제33조)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(법 제69조)로도 적용되므로,
- 재직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**당연 퇴직**됨

***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(당연퇴직)**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**당연히 퇴직**한다.

1.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Q 언제부터 시행되는지? 법 시행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적용되는지?

A (시행일) 개정안 공포('18.10.16) 6개월 후 ('19.4.17 부터) 시행

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)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을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

※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

청탁금지법 Q & A

Q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?

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,

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,

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.

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으면?

A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**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제대상이 아님.**

Q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(3만원)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?

A **(동료 사이)**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함.

- 다만, 인사, 감사, 평가 등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.

○ **(부서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)** 사교,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,

- 다만, 인사, 평가 등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.

○ **(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)** 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됨.

「공무원 행동강령」 Q & A

Q 업무추진비의 적정 사용 방법은?

A 업무추진비 집행기준('17.1월 기획재정담당관)

○ 집행금액과 관계없이 집행목적·일시·장소·집행대상 등을 명시한 **증빙서류 첨부**

○ 집행금액이 **건당 50만원 이상**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,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

○ 정부구매카드**(클린카드) 사용**이 원칙

▌「클린카드 제도」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,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(업무추진비)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

▸ 법정공휴일 및 토·일요일,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, 비정상시간대(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)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

* 다만, 출장명령서,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용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 허용

▸ 권익위가 권고한('07.10월, '11.10월, '14.10월) 의무적 제한업종(유흥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 등)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

▸ 클린카드 전표에 반드시 서명하는 자의 성명(석자)으로 서명

Q 외부강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?

Q 근무시간외 시간에 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지?

A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

Q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세후(稅後) 금액인지?

A 세전(稅前) 금액을 기재하면 됨

Q 대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대상인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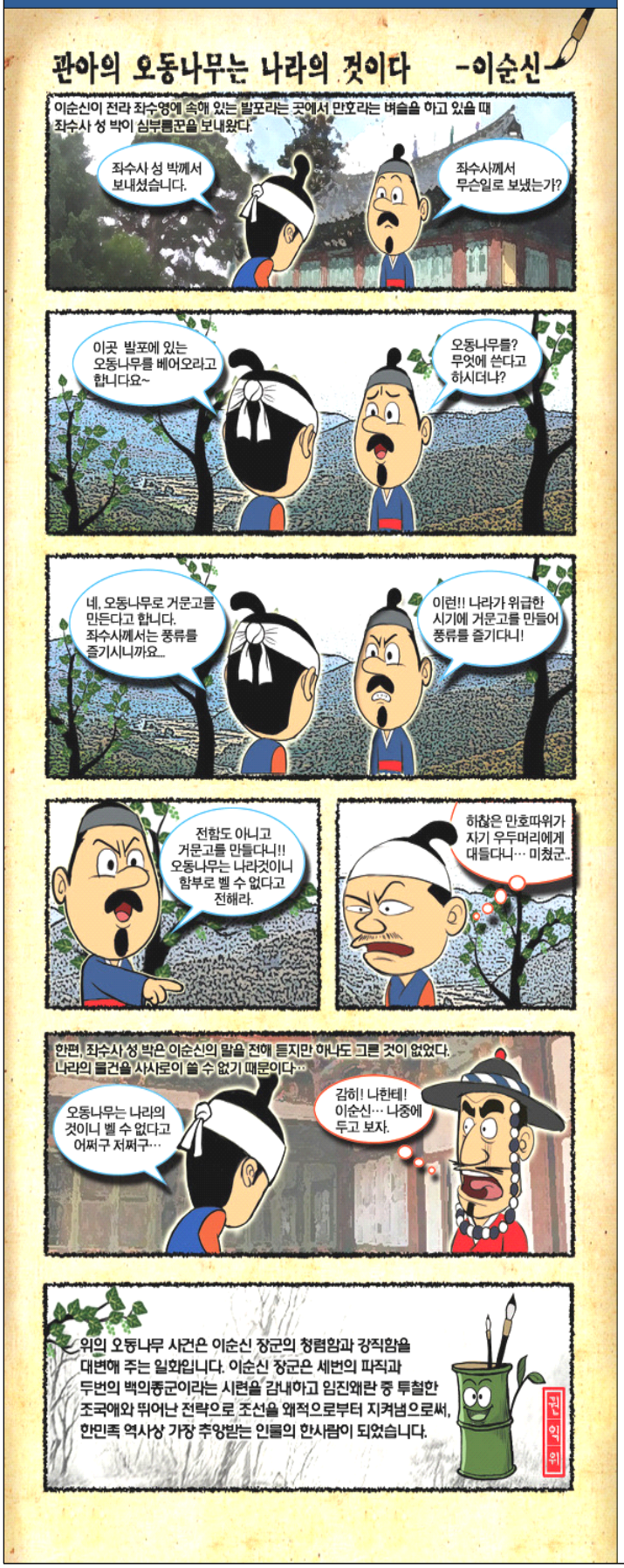
A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

*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출장신청서에 사전신고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신고 가능

Q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?

A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(공무원 복무규정)는 별개 사안임.
따라서, 신고 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, 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함

역사속 청렴이야기



청렴 명언

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
당관지법 유유삼사 왈청왈신왈근
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
지차삼자 즉지소이지신의

관리자가 지켜야 할 법은
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
청렴, 신중, 근면이다.
이 세가지를 알면 몸가짐의
방법을 아는 것이다.

– 동몽훈(童蒙訓)* –

* 송나라 여본중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교육서

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
행복하다. 이 말은 낡았지만
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
할 수 없는 진리이다.

– 톨스토이 –

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
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.
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
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.
공을 이루고 떨쳤으면 몸을 빼는
것이 하늘의 도이다.

– 노자 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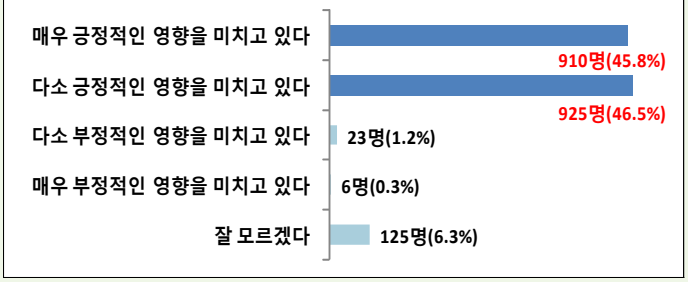
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결과 안내

1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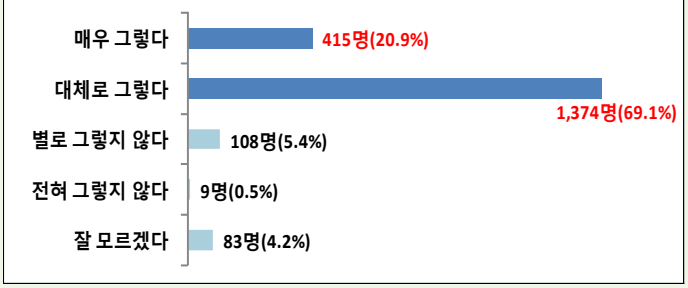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: 고용노동부 전 직원
- 조사기간: '18.7.16 ~ 7.27(2주간)
- 조사내용: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체감 변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
- 응답현황: 조사대상 9,735명 중 1,989명 응답(응답률 20.4%)

주요 조사결과

(시행효과)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「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」는 응답이 92.3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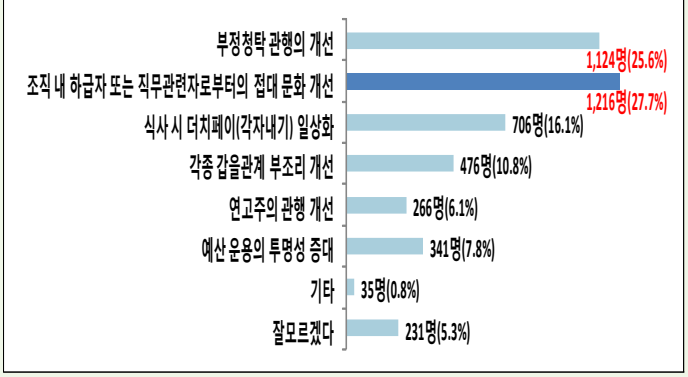


(준수여부)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「그렇다」는 응답이 90.0% 차지



(변화된 점)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부에서 변화된 점으로는 「접대문화 개선」이 27.7% (복수응답)로 가장 많음

*「부정청탁 관행 개선」 응답도 25.6% 차지



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

사례 "이번엔 내가 살게" 접대받은 만큼 사주면?

